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 관리체계

2024.6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목 차



I . 일반현황	1
II .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 관리체계	3
1. 자금의 용도(Use of proceeds)	3
2.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4
3. 자금관리(Management of proceeds)	5
4. 사후보고(Reporting)	5
IV . 기타사항	5

I .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 (설립목적)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설립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04.3월 정부 출자기관으로 설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인수 및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영업 양수)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流動化)와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자현황 (24년 1분기 기준)〉

(백만원, %)

구 분	정부	한국은행	주택도시기금
납입자본금	1,635,800	995,000	106,600
지분율	59.8	36.3	3.9

2. 주요 사업

- (유동화) 서민·실수요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정책모기지를 금융회사를 통하여 공급
- (주택신용보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구입자금대출 및 주택공급자의 건설자금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
- (주택연금보증)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

3. 기관의 미션 · 비전 및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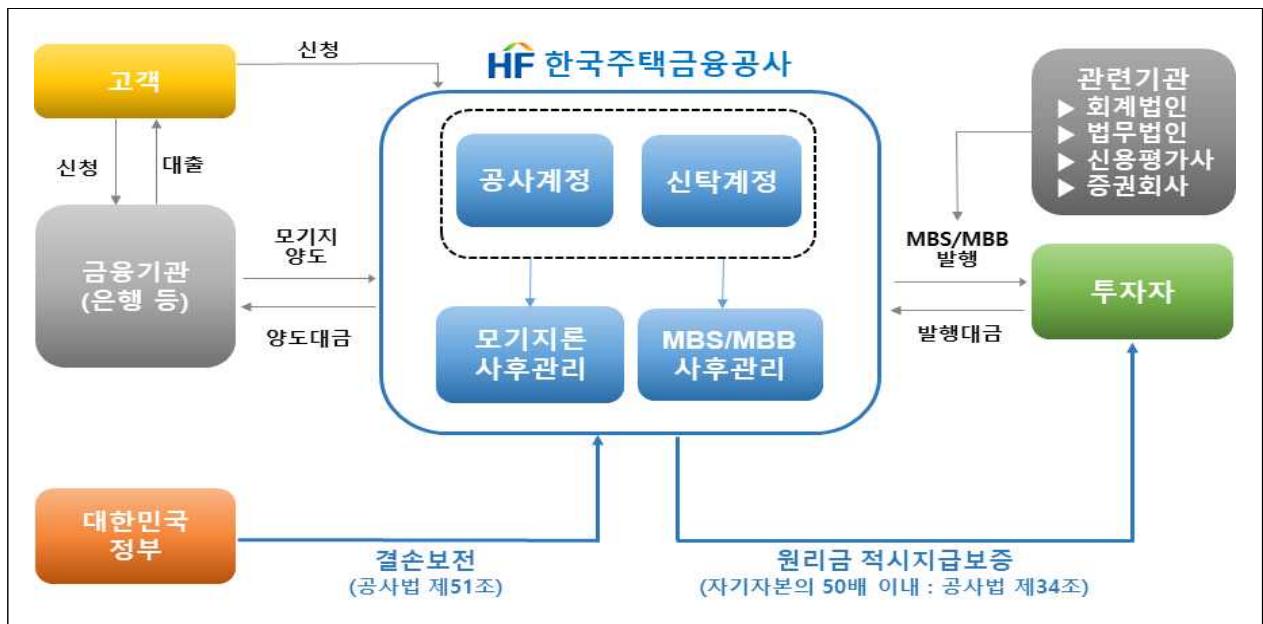
- (미션) 공사의 설립목적과 정부 정책 방향, 국민 주택금융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본원적 역할과 목표를 제시
- (비전) 미션 달성 · 국민의 주거행복 향상을 위한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주택금융 선도기관이 되겠다는 의지 및 미래위상 반영
- (핵심가치) 공사 미션과 비전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공감하는 3대 핵심가치를 설정하여 가치기준의 정립 및 내재화

미션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		
핵심 가치	공익성	전문성	신뢰
전략 목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 고도화	미래지향 주택금융 인프라 강화	지속가능 책임경영 실현
전략 과제	무주택 국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디지털 혁신 기반 주택금융 선도	ESG 경영 기반 주택금융 활성화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금융지원 확대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적 역할수행	재무건전성 및 선제적리스크 관리 강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미래금융 전문역량 축적 강화	민간혁신성장 및 지역사회 상생생태계 확대
			업무효율화 및 규제개혁 실현
			국민중심 소통과 참여문화 확산

II.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 관리체계

1. 자금의 용도 (Use of proceeds)

- 공사는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유동화 사업의 자금수요 발생 시 필요재원 조달
 - 공사는 무주택자에게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적격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MBS(주택저당증권) 또는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유동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사 고유계정에서는 MBS 지급보증 및 MBB 담보 설정 등 유동화 사업에서 자금수요 발생 시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조달
 -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자기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공사는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보증을 실시
 - MBB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공사 고유계정에서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사는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담보를 설정



2.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① (정책모기지 공급) 서민·실수요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정책모기지를 공급 (설립 이후 약 440조원의 정책 모기지 공급)

- 정책모기지부는 주택저당채권의 심사기준 및 양수규정을 관리

〈정책모기지 공급액〉

(조원,건)

구 분	'04~'20년	'21년	'22년	'23년
공급액	336.5	31.8	23.1	49.3
공급건수	3,063,513	185,533	146,693	217,381

〈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구 분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운영규정	취급은행 업무처리기준	공사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기준
신청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소득 한도	제한없음	7천만원	6천만원 (생애최초 등 : 7천만원)
주택가격 한도	9억원	6억원	5억원 (신혼·2자녀 : 6억원)
대출한도	5억원	3.6억원 (생애최초 : 4.2억원, 다자녀 : 4억원)	2.5억원 (생애최초 : 3억원, 신혼·2자녀 : 4억원)
대출만기	10년 이상 50년 이하	10·15·20·30·40·50년	10·15·20·30년
거치기간	1년 선택 가능	미운영	1년 선택 가능

〈정책모기지 공급에 따른 사회적가치 제고 효과〉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한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만기 10년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해 주택 담보대출 시장의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
-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증진
 - 정책모기지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신혼·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공급
 - 미혼과 만혼의 증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향상에 기여
 - 한부모·다문화·장애인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② (재원조달) 정책모기지를 기초로 채권시장에서 유동화증권(MBS, MBB)을 발행하여 안정적인 주택자금 조달과 장기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

- MBS는 유동화증권부에서 발행 및 MBB는 국제금융부에서 발행

〈유동화증권 발행액〉

구 분	'04~'20년	'21년	'22년	'23년
MBS	322.1	34.5	15.0	33.4
MBB(커버드본드)	8.0	2.1	2.2	3.6
계	330.1	36.6	17.2	37.0

- 전체 MBS 발행액 중 만기 5년 이상 발행액이 약 65%를 차지
- 해외MBB(커버드본드)의 정례적 발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을 대표하는 지표채권으로서 위상 정립
 - * ('21년) 2.1조원 → ('22년) 2.1조원 → ('23년) 3.6조원 규모
- 싱가포르·뉴욕 사무소 개소, IR(Investor Relations)을 통한 외국인 투자 비중 확대로 글로벌 투자저변 확장
- 유동화증권의 주요 투자자는 은행, 보험사 및 연기금 등으로 구성

※ (참고) MBS와 MBB의 차이

- (MBS)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자기신탁을 설정하여 공사 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off-balance)으로 국내 자금조달 시 주로 활용
- (MBB) 공사계정 내 별도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을 담보로 공사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on-balance)으로 해외 자금조달 시 주로 활용하며 해외에서는 MBB보다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라는 명칭으로 통용

③ (공사 지급보증 등) 신탁자산부에서는 공사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신탁 여유자금 규모에 따라 공사에 지급보증 이행을 청구, 유동화증권부는 MBB 발행 시 공사에 초과담보를 요청

공사법 제34조(지급보증)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④ (공사채 발행) 상기 절차에 따라 재무회계부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사회적 가치 채권 발행을 실시

- 연간 사회적 가치 채권 발행한도는 직전연도 말에 이사회 승인을 득함

3. 자금관리 (Management of proceeds)

- 공사 자금업무규정 등 내규에 근거하여 여유자금에 대하여 자금관리 및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
- 여유자금은 공사법 및 금융위 승인사항으로 제한하여 현금성자산, 중장기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 재무회계부에서는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4. 사후보고 (Reporting)

- 사회적 가치 채권(Social Bond)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될 때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 안내문”을 매년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공시예정
 - 사회적 가치 채권 발행내역(발행일자, 만기, 규모, 금리 등)
 - 발행대금 사용 현황
 - 사회적 가치 채권 관리체계 변동내역 등

IV. 기타사항

- (외부검토) 사회적채권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으며, 동 의견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준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 가치 채권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사회적문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내부 규정 및 법률적 약정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확인함

※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34조(지급보증)

①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